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18
----------	-------

발의연월일 : 2026. 4. 24.

발 의 자 : 김성원 · 정동만 · 김선교
고동진 · 김정재 · 김용태
박충권 · 이현승 · 김승수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자원(資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0.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1. “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절차, 지정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지정의 해제를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의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
 3. 동일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4.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매년 부산물의 배출 실적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이용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5(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이하 “순환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계획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소에 관한 사항
5.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순환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이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서 자원(資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u></p> <p>10. <u>“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u></p> <p>11. <u>“부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건을 말한다.</u></p> <p><u>제30조의2(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u></p>

<신 설>

1.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 내에 부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입주 수요를 확보하거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경우

②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신청 절차, 지정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신청자가 지정의 해제를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특례 적용) ①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내의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부산물을 순환이용하는 경우 그 부산물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1.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배출하거나 순환이용하기 전에 부산물의 종류, 순환이용의 방법, 위탁·수탁 업체정보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2. 기존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어 이를 변경신고한 경우

3. 동일한 순환경제규제특례구

역 내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4. 순환이용하는 부산물이 사람

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

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

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매년 부산물의 배출

실적 및 순환이용 실적을 기후

<신 설>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 실적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산물의 순환이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순환이용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의5(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이하 “순환경제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의 지정·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계획

에 관한 사항

4. 규제특례의 적용·변경·취

소에 관한 사항

5. 규제특례와 관련하여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운영

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순환경제규제특례구

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순환경제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